

청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가단552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19,4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 주식회사의 D에 대한 2015. 7. 29.자 대출금 채권을 2018. 11. 2. 양수하여 D으로부터 4,119,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자이다. 그런데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6.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며 피고도 약의의 수익자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119,4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 수익자의 약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D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아파트 옆옆 세대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배우자인 F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2016. 1. 27.경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D에게 매도하고 2016. 2. 5.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밟은 사실, 당시 F가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에 웃돈을 얻은 9,393만 원과 피고가 2016. 2. 11. D이 지정한 G의 계좌를 통하여 대여한 700만 원을 더한 1억 93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D이 피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6. 2. 28.경 작성하였고, 이후 D이 2016.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18.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H 경매절차에서 80,936,038원을 배당받았으나 3,000여만 원의 채권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혁

